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12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의자 : 정동영 · 김원이 · 이기현

장종태 · 복기왕 · 박해철

주철현 · 황정아 · 최민희

김상욱 · 김문수 · 김병기

김윤 · 박지원 · 이훈기

송재봉 · 모경종 · 박희승

이상식 · 문금주 · 문진석

박홍근 · 김영배 · 권향엽

이용선 · 양부남 · 이광희

이재관 · 박용갑 · 정진욱

이병진 · 황명선 · 김남근

문대림 · 이재강 · 허영

조인철 · 오세희 · 윤건영

정일영 · 김현정 · 최혁진

의원(42인)

###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 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신고되지 않았거나 금지된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으며, 살포를 제지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할 때 가능한 한 현장의 위해 가능성, 대북전단의 내용, 물품의 수량, 관계인의 수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의2(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신고되지 않았거나 금지된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으며, 살포를 제지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산을 명할 수 있다.</p> <p>②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할 때 가능한 한 현장의 위해 가능성, 대북전단의 내용, 물품의 수량, 관계인의 수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